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혜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682
----------	-------

발의연월일 : 2024. 5. 24.

발 의 자 : 장혜영 · 심상정 · 배진교
강은미 · 허숙정 · 양경규
이자스민 · 용혜인 · 윤미향
강성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할 수 없도록 하고, 제한적인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 상임위원회의 세법 심사, 인사청문회에서 인사 검증 등 과세정보의 필요성이 뚜렷한 사안이 비밀유지 의무의 예외로 인정되고 있지 않아 원활한 심의와 검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예외조항에서까지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세무공무원의 재량을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고 있어 형사재판에서의 사법부의 요구나 필수적 행정업무 협조에서도 과세정보 제공이 거부되거나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비밀 유지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세무공무원은 과세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예외 사유에 국회 위원회의 의결로 안전 심의를 위해 과세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해

입법·사법·행정의 효과적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13제1항).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공할 수 있다”를 “제공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국회법」에 따라 국회에서의 안건 심의를 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1조의13(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 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u>제공할 수 있다.</u>	제81조의13(비밀 유지) ① ----- ----- ----- ----- ----- ----- ----- ----- ----- ----- ----- ----- ----- ----- ----- ----- <u>제공하여야 한다.</u>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신설>	9. 「국회법」에 따라 국회에서의 안전 심의를 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9. (생략)	10. (현행 제9호와 같음)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